서대문우체국 공고 제2023-11호

# 2023년 제2회 서대문우체국 우체국소포원 최종합격자 발표

2023년도 제2회 서대문우체국 우체국소포원 채용시험 최종 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발표합니다.

1. 최종합격자명단

| 응시번호 | 합격여부 | 비고 |
|---|---|---|
| 서대문 001 | 합격 | |

2. 채용안내 :

최종합격자는 신규채용에 필요한 아래 구비서류들을 준비하여 제출기한 내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등록장소 : 서대문우체국 4층 지원과(인사담당)
나. 제출기한 : 개별 통보
다. 구비서류
①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1통
② 주민등록등본 1통(주민번호 뒷자리까지 모두 기재)
③ 채용신체검사서(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서 인정하는 의료기관) 1통【붙임1 양식】
④ 사진(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) 1매
⑤ 신원보증보험증권 1통(가입보험금 2,000만원)
⑥ 운전면허증 사본 1부
⑦ 범죄사실 부존재 확인서 1부【붙임2 양식】
⑧ 정보화관련 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 1부(해당자에 한함)
⑨ 취업지원대상자, 장애인 등 증빙 서류(해당자에 한함)
라. 최종 합격자는 연락처 변경 시 즉시 서대문우체국 지원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(☏ 02-390-9212)

2023년 4월 14일

서 대 문 우 체 국 장

【붙임1】

■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[별지 제1호서식] <개정 2021. 1. 5.>

(앞쪽)

# 신체검사용 채용 신체검사서

※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.

| ① 구 분 | ② 시험실시기관 | ③ 응시직명 | ④ 응시번호 | ⑤ 성 명 | | 사 진 (3.5㎝ × 4.5㎝) ※ 압인 또는 계인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⑥ 검사 시 | | | | | | |
| ⑦ 재사용 | | | | ⑧ 주민등록번호 | | |

## 검 사 내 용

| 키 | | cm | 체 중 | | kg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허리둘레 | | cm | 혈 압 | | |
| (교정)시력 | 좌: ( ) 우: ( ) | 색 신 (색 각) | | (교정)청력 | 좌: ( ) 우: ( ) |
| 종 양 질 환 | | | 이비인후질환 | | |
| 호 흡 기 질 환 | | | 심 혈 관 질 환 | | |
| 소 화 기 질 환 (간 질 환 포함) | | | 신장/비뇨기계질환 | | |
| 내 분 비 질 환 | | | 혈 액 질 환 | | |
| 신 경 질 환 | | | 피 부 질 환 | | |
| 근골격계 질환 | | | 안 질 환 | | |
| 정 신 질 환 | | | 흉부X선 검사 | | |
| 기 타 | | | | | |

위와 같이 검사했습니다.

년 월 일

검사자(담당의사) (서명 또는 인)

| 검사 결과 합격 여부 | [ ]합 격 [ ]판 정 보 류 | 합격 사유 | |
|---|---|---|---|
| 판정보류 사유 (질환명 및 재신체검사 필요 사유 등) | * 필요시 소견서 별도 첨부 | | |

「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」에 따라 위와 같이 판정했음을 증명합니다.

년 월 일

검진기관의 장 (서명 또는 인)

| 유효기간 | 판정일부터 1년 |
|---|---|

210㎜×297㎜[백상지(80g/㎡)]

##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

**[응시자]**

1. 응시자는 굵은 선 안에만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.
   가. ②란은 시험실시기관을 적어야 합니다.
   (예: 인사혁신처, 국세청 등)
   나. ③란에는 응시한 직명을 적어야 합니다.
   (예: 9급 세무직, 7급 전기직 등)
   다. ⑦란은 신체검사 후 1년 이내에 같은 직렬의 다른 시험에 응시하는 등의 사유로 다시 사용할 경우에 적어야 합니다.
2. 응시자는 굵은 선 안쪽의 사항을 모두 적은 후에 신체검사서를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과 함께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검진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.
   ※ 응시자는 본인 질환에 대해 별지 제2호서식의 전문의 소견서를 미리 제출할 수 있습니다.

**[검진기관]**

1. 응시자의 사진에는 반드시 압인(押印: 도장을 눌러 찍음) 또는 계인(걸침도장)을 해야 합니다.
2. "검사 내용"란은 검사자가 검사 결과를 적고 확인해야 합니다.
   가. 검사 결과 기재의 예: 질병명(심부전증, 백혈병, 척수종양 등)을 적거나 "정상", "양호", "이상 없음" 등으로 적어야 합니다.
   ※ 필수사항: 질병이 있는 경우 "합격" 또는 "불합격"과 관계없이 반드시 질병명을 적어야 합니다.
   ※ 검진기관에서는 필요시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위해 활용하고 있는 문진표를 채용 신체검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.
   나. 임산부나 흉부X선 검사를 받을 수 없는 특별한 건강상의 이유가 있는 응시자에 대해서는 흉부X선 검사를 면제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면제 사유를 흉부X선 검사 항목에 적습니다.
   -(작성 예시) 임산부인 경우 "임신으로 인해 흉부X선 검사 면제"라고 적습니다.
3. "검사 결과 합격 여부"란 등에는 신체검사를 실시한 검진기관의 장이 판정 결과 등을 해당 []안에 "√"로 표시하고 그 사유 등을 적어야 합니다.
   ※ 응시자가 본인 질환에 대해 전문의 소견서를 미리 제출한 경우 판정에 참고합니다.
   가. 합격 사유 기재의 예
   - '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' 에 해당하지 않음
   - 0000 질환에 해당하나 000000한 이유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함
   (예시: '만성골수성백혈병' 에 해당하나 글리벡 복용 후 세포유전학적 완전 관해(官解)에 도달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함)
   나. 판정보류 사유 기재의 예
   - 0000 질환에 대해서는 000000한 이유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할지 의심되므로 000000 분야 전문의의 재신체검사 필요 (예시: 중추신경계 염증성 질환이 있는 경우로 팔다리가 쇠약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할지 의심되므로 신경과 분야 전문의의 재신체검사가 필요함)
   ※ 응시자의 질환이 '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' 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판단이 곤란한 상황으로 관련 분야의 전문의가 재신체검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판정보류로 기재합니다.
4. 검사 결과에 대한 판정은 「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」에 따라야 합니다.

【붙임2】

# 범죄사실 부존재 확인서

성명 :

생년월일 :

주소 :

상기 본인은 본인에 대한 범죄경력 자료를 직접 조회·열람하였으며, 조회 결과 채용공고 혹은 우정사업본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23조(자격요건) 2항에 위배되는 범죄경력이 없음을 확인합니다.

향후, 이 같은 내용이 사실이 아닐 경우, 근무 기간과 관계없이 채용 및 근로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을 서약합니다.

년 월 일

성명 : _____(서명)

※ **(범죄경력 자료 조회·열람 방법)** 본인에 한하여 범죄경력회보서발급시스템(http://crims.police.go.kr) 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혹은 휴대폰 인증 후 확인 가능

※※ **(관리규정 제23조(자격요건) 2항)**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근로자가 될 수 없다.

1.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
2. 우정사업조직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, 우편관계법령 또는 계약사항에 위반하여 계약이 해지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